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25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이소영·장철민·전용기

김성환 · 김정호 · 박지혜

김한규 · 신정훈 · 박홍배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이에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그러나, 현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 명칭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취지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

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 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4조제7호의2, 제36조의3,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424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44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후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기후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의3(기후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기후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기후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후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후인지 예산서

제60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6조의3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의2에 따른 기후인지 예산서 및 기후인지 결산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 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9호 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예산서 및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
칙) ①・② (생 략)	칙)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
	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
	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
	대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
	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
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발 등)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	
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7의2. 기후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기후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6조의3(기후인지 예산서의 작
	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 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 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 다.
1. ~ 7. (생 략)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한 보고서(이하 "기후인지 예 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기후인지 예 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기후인지 예산서에는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 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 다. ④ 그 밖에 기후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1144소의 2(예산안의 점구서류) ①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 14. (생략)

② • ③ (생 략)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 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 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 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 하여야 한다.

1. ~ 9. (생략)

<신 설>

10. ~ 16. (생 략)

② ~ ⑧ (생 략)

7의2. 기후인지 예	산서
-------------	----

- 8. ~ 14.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시 등) ① -----

- 1. ~ 9. (현행과 같음)
- 9의2. 제36조의3 및 「지방회 계법」 제18조의2에 따른 기 후인지 예산서 및 기후인지 결산서
- 10. ~ 16. (현행과 같음)
- ② ~ ⑧ (현행과 같음)